

제339회 임시회
2015.4.30. (목)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 4. 30 (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양섭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15년 4월 13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4월 21일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양섭 의원)

가. 제안이유

- 농수산물식품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협의회 등 조직 전문화와 수출 우수기관, 단체 등에 대한 시상제도를 신설하여 경쟁력 제고를 도모함으로써 충북경제 4%를 조기실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농수산물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

- 농수산물식품산업의 수출 촉진 활성화를 위해 목적 및 정의 관련 조문 개정(안 제1조~제2조)
- 현행 농수산물을 “농수산물식품”으로 확대하고 체계화함(안 제1조~제11조)
- 농수산물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시상제도의 확대(안 제10조)
- 농수산물식품수출진흥협회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제반 규정의 구체화(안 제11조~안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신선기)

-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농수산물식품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협의회 등 조직의 전문화와 수출 우수기관, 단체 등에 대한 시상제도를 신설하여 경쟁력 제고를 도모함으로써 충북경제 4%를 조기실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농수산물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수산물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수산물식품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식품”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와 제7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과 식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과 제13호에서 정의한 농수산가공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농수산물식품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와 충청북도가 농수산물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식품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과 농수

산식품 수출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수산물식품 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농수산물식품 수출촉진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농어업인 등의 책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식품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수산물식품의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5조(농수산물식품수출진흥시책 수립)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식품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물식품수출진흥시책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수산물식품수출진흥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농수산물식품 수출기반 확대)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식품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모두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식품 수출전문단지의 지정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지원
2. 농수산물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의 지원
3. 농수산물식품수출품 생산 농어업인과 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한 지원
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와 관련 기자재 구입 지원
5. 농수산물식품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농수산물식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농수산물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시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도지사는 농가의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모두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수출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국제 품질인증 획득과 관련한 지원
4.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
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수출진흥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해외에서 농수산물 식품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 지원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와 기자재 지원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과 포장재 지원
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과 현지 홍보지원
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수산물 식품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② 도지사는 농수산물 식품과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생산 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해외시장 개척지원) 도지사는 농수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모두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지원
3. 수출유망품목 개발과 마케팅 지원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지원
5. 그 밖에 도내 농수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제10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등) 도지사는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하여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시·군, 수출업체, 생산자조직 및 농수산물 수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 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농수산물수출진흥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하여 충청북도농수산물수출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농수산물수출진흥 시책 수립에 대한 사항
2. 농수산물 수출진흥에 필요한 홍보 및 활동
3. 그 밖에 도지사가 수출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 농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원예유통식품과장·유기농산과장, 농협연합마케팅추진단장,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충북본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수출농수산물식품 생산자단체 및 업체대표, 수출품 생산농민, 농경제, 농수산물식품 관련 교수 및 연구원

2. 도내 농수산물식품 수출 전문상사, 국내외 수출관계자, 수출컨설팅 전문가 및 해외 주재 농수산물식품 유통·판매업자 등

3.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협의회는 년 2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4조(실비보상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외주재 위원의 경우 참석수당과 항공료, 현지활동 실

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제6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어업·농어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